

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의거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1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지정목적
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자 함

2. 지정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

- (대표자) 김정렬
- (주 소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(중동)

3. 업무내용

- ① 지하정보통합체계* 구축 및 운영
* 지하정보 통합 관리·활용시스템, 지하시설물정보 통합 관리·활용시스템 등
- ②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
- ③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
- ④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·개발 및 기술지원
- ⑤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안전법 제47조에 따라 구축·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 체계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·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공동 활용

4. 지정기간 : 2023년 4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